

제증명수수료규정

(제정 1986. 3. 4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제 증명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징수대상 및 요금) ①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 증명별	수 수 료		비 고
	국 문	외국문	
재 학 증 명 서	400	400	
졸 업 증 명 서	400	400	
휴 학 증 명 서	400	400	
졸 업 예 정 증 명 서	400	400	
제 적 증 명 서 (제 적 자)	400	400	
수 료 증 명 서 (졸 업 탈 락 자)	400	400	
성 적 증 명 서	400	400	
재 적 증 명 서 (휴 학 생)	400	400	
수 료 예 정 증 명 서	400		
학 적 부	400		
입 학 성 적 증 명 서	400		
교 직 과 목 이 수 화 인 서	400		
교 직 부 전 공 이 수 예 정 증 명 서	400		
법 학 과 목 학 점 취 득 증 명 서	400		
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	-		
수 료 증 명 서 (재 학 / 휴 학)	400		

② 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수수료 외에 그 실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
제4조(징수면제)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수수료 징수 및 처리) ① 수수료는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며, 세입 조치한다.

② 납입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